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월 23일 류중혁, 김영희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2회 부천시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3월 14일) 상정보류
- 제143회 부천시의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5월 20일) 상정보류
- 제150회 부천시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2월 19일) 상정보류
- 제151회 부천시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4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신체적 장애나 한 부모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의료급여 중단 위험에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함.(안 제3조)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참고사항

○ 운영현황

·경기도내 자치단체 운영 사례(2008. 5월 현재)

시군명	조 례 명	지 원 대 상	시 행 일
경기도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65세 이상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	2008. 1. 1.
안양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건강보험료가 월1만원 미만인 세대로서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세대 2. 모·부자 세대 3.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4. 만성질환자 세대	2008. 1. 1.
안산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 세대를 우선 지원	2008. 1. 1.
고양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65세 노인가구와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 포함한 노인가구	2006.12.12.
구리시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경로연금수급권자, 장애수당수급자, 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 등 법정 차상위계층	2008. 1. 1.
오산시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007. 1.12.

시군명	조 례 명	지 원 대 상	시 행 일
화성시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2. 4급이하 장애인 또는 18세이하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2007. 6. 8.
하남시	하남시 저소득특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2. 등록 장애인 3. 모·부자가정 세대	2007. 10. 1.
광주시	광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2. 등록 장애인 3. 모·부자가정 세대	2007. 4.10.
과천시	과천시 저소득특세계층 지원조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 모·부자가정 세대 3.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2007. 6.22.
김포시	김포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모·부자가정 세대	2007. 6.27.
과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2006. 6. 1.

·전국 운영사례

2007년 8월말 현재 전국 60여개 자치단체에서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9년 2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는 약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예산수반: 연간 약 122,616천원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세대 현황

·2007. 11월 기준

(단위: 세대, %, 천원)

구 분		보험료 지원 대상 세대					
		경감세대 소 계	등 록 장애인	모 자 가 정	부 자 가 정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 성 질 환
2,000원 ~ 10,000원 이하	세대수	1,715	1,238	310	49	3	115
	금 액	10,218	6,791	2,254	363	14	796
5,000원 미만	세대수	406	373	9	4	2	18
	금 액	1,023	907	25	13	8	70
5,000원 ~ 10,000원 이하	세대수	1,309	865	301	45	1	97
	금 액	9,195	5,884	2,229	350	6	726
비 율	세 대	100	72.18	18.07	2.86	0.18	6.71
	금 액	100	66.46	22.06	3.55	0.14	7.79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자료 제공

·2009. 2월 기준 : 1,716세대 월 11,222천원

- ▶ 모부자가정 292세대, 장애인 1,300세대, 만성질환자 121세대, 소년소녀가장 3세대

3. 질의 및 답변요지

【 1차심사시 】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과 체납현황은?	○ 1,715세대중 체납세대는 약 15%에 이릅니다
○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볼 수 있는가?	○ 차상위계층중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세대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므로써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로 볼 수 있음.
○ 제정취지는 공감하나 이는 결국 체납보험료 징수 주체인 보험공단의 업무를 덜어 주는 측면도 있는데?	○ 그런 측면도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타 시·군의 같은 조례를 볼 때 지원대상이 각각 다름.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여 그 지원범위를 넓히고 시·군간 통일 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보는데?	○ 일단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경기도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특별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험료 경감이나 결손처리 등 대책을 보험공단과 적극 협의하겠음.
○ 본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지원범위를 확대 등 통합을 건의한 적은 있는지?	○ 도의원에게 건의한 적은 있으며, 경기도에도 적극 건의할 계획임. 이러한 과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함. (이상 사회복지과장)

【 2차심사시 】 : 없음

▶ 경기도조례 개정건의 등 그간의 추진상황을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함.

【 3차심사시 】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세대 1,170세대중 체납자는 몇 %나 되 는가?	○ % .
○ 장기 체납자만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가?	○ 체납사유가 각각 다르다고 보며, 국가사무이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임.
○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4차심사시 】 : : 없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2008. 3. 14. 1차심사시

·2008. 1. 1부터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65세이상 노인가구에 도·시비로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

○ 2008. 5. 20. 2차심사시

·중앙정부에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확대할 계획에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심사함이 타당함.

○ 2009. 2. 19. 3차심사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됨에 따라 조례안 의결시 장기요양보험료 감면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므로 집행부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계속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

나. 찬성토론

○ 2009. 4. 1. 4차심사시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보험료를 차감 지원하는 규정과 장기요양보험료 감면규정을 담아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봄.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219호
의결 년월일	2009. 4. 2. (제151회)

제안년월일 : 2009. 4. 1.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세대에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감면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저소득세대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수정함.(제명, 안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2조)
- 시행일을 2009년 7월 1일로 수정함.(부칙)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라 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를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보험료는’을 ‘보험료 등은’으로 수정한다.

안 제6조 제2항 중 ‘보험료’를 ‘보험료 등’으로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보험료’를 ‘보험료 등’으로 수정한다.

안 제8조 중 ‘보험료’를 ‘보험료 등’으로 수정한다.

부칙 중 ‘2008년 7월 1일부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부천시 저소득세대 <u>국민건강보험료</u>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 장애나 한부모가족 환경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u>국민건강보험료</u>(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u>보험료</u>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 4 (생략)</p> <p>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u>보험료</u>는 지원대상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p> <p>제4조(지원방법) (생략)</p> <p>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생략)</p> <p>제6조(사실조사) ① (생략) ② 시장은 <u>보험료</u> 지원대상자의 결정</p>	<p>부천시 저소득세대 <u>국민건강보험료</u> 등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 1 조 (목 적) ----- ----- ----- ----- <u>국민건강보험료</u>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 -----.</p> <p>제 2 조 (지 원 대 상) ----- ----- ----- <u>국 민 건 강 보 험 료</u> ----- ----- ----- <u>다</u> 만, 법령 또는 다른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 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내용)① ----- ---<u>보험료</u> ----- <u>등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방법)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실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u>보험료</u> 등 -----</p>

조 례 안	개 정 안
<p>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보험료</u>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지원대상자가 <u>보험료</u>의 지원을 거부하는 때 <p>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u>보험료</u>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p>제9조(시행규칙) (생략) 부 칙</p> <p>이 조례는 <u>2008년 7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 ----- ----- -----.</p> <p>제 7 조 (지 원 중 지) ----- ----- <u>보험료</u> 등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u>보험료</u> 등 ----- <p>제8조(환수조치)① ----- ----- -----</p> <p><u>보험료</u> ----- <u>등을</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p>제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 ----- <u>2009년 7월 1일부터</u> -----.</p>

[수정안 포함]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 장애나 한부모가족 환경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3. 소년소녀가장세대
4. 그 밖에 만성질환자세대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은 지원대상

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매월 납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검토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를 일제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료 등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등의 지원을 거부하는 때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